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091
----------	-------

발의연월일 : 2025. 12. 10.

발 의 자 : 이성윤 · 민형배 · 손명수
박균택 · 고민정 · 조계원
문정복 · 한창민 · 박은정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단속과 구금의 위험 때문에 체불된 임금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주노동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올해 7월까지의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임금체불액과 피해자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 대통령도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지적하면서 개선을 지시한 바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로부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이 임금체불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주들이 체불임금 지급 회피를 위해 고용노동부 구제절차 진행 중 피해 노동자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임금 지급 요구 시 미등록 사실을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문제를 진단한 바 있음.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출국대상이 된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구금하지 않는 ‘구금 대안 제도’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도 구금 대안 제도의 도입 및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 여러 연구들은 구금 대안 제도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용효율성과 절차준수율 측면에서도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이에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다고 하더라도 구금을 하는 대신에 비구금적인 수단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금 대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라는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2 등).

주요내용

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호시설에 보호하는 대신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보호 대안 수단을 적용함(안 제63조의2).

나. 비구금적인 보호 대안 수단으로서, 체불임금 수령 현황 보고의무 부여, 거주지 보고의무 부여 등의 수단을 규정함(안 제63조의3제1항).

다.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방안 등을 담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법무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와 체류관리의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의3제3항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로 하고,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칙) ①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아니하고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하 “보호 대안 수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63조의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안 수단)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불임금 수령 현황 및 수령계획에 관한 정기 보고의무, 거주지 보고의무 및 거주지 변경 시 신고의무, 정기적 유선 보고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대안 수단은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에 관한 현황과 체불임금 수령 계획 및 노력을 확인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2.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적합하면서도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단인지 여부
3. 해당 외국인의 무단이탈 가능성에 비하여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과도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 대안 수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금체불 여부의 확인 등 보호의 개시단계부터 보호 대안 수단의 대상자를 식별하는 절차의 마련
2.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3.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등 출국 장애사유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방안
4.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대안 수단 대상 외국인에 대한 취업 등 기본적 생활 유지와 관련한 기준 마련

5. 보호 대안 수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송환율 및 무단이탈률에
관한 통계구축 계획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3조의2(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특칙) ① 제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중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에 따른 보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미지급된 임금을 수령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하지 아니하고도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하 “보호대안 수단”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한다.</u>
<u><신 설></u>	<u>제63조의3(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 대안 수단)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체불임금 수령 현황 및 수령계획에 관한</u>

정기 보고의무, 거주지 보고의무 및 거주지 변경 시 신고의무, 정기적 유선 보고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 대안 수단은 병과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 대안 수단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체불임금 수령에 관한 현황과 체불임금 수령 계획 및 노력을 확인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2.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해당 외국인의 소재 파악을 위하여 적합하면서도 과도하게 자유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수단인지 여부

3. 해당 외국인의 무단이탈 가능성에 비하여 부과하는 보호 대안 수단이 과도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법무부장관은 보호 대안 수

단에 관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임금채불 여부의 확인 등
보호의 개시단계부터 보호
대안 수단의 대상자를 식별
하는 절차의 마련

2.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3. 국선노무사 제도의 활용 등
출국 장애사유의 신속한 해
소를 위한 방안

4. 인도적 사유 등 특별한 사
정이 있는 대안 수단 대상
외국인에 대한 취업 등 기본
적 생활 유지와 관련한 기준
마련

5. 보호 대안 수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송환율 및 무
단이탈률에 관한 통계구축
계획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3조의2·제63조의3 (생략)

제63조의4·제63조의5 (현행 제6

3조의2 및 제63조의3과 같음)
